보험계약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는 보험계약 과정의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고, 보험계약 체결 전·후, 계약유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절차, 보험계약 분쟁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계약자 1
1. 보험의 이해 4
1.1. 보험계약의 구성 4
1.1.1. 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4
2. 보험계약의 성립 8
2.1. 보험 가입 8
2.1.1. 보험가입 전 확인사항 8
2.1.2. 보험가입 시 확인사항 9
2.1.3. 특정 보험의 의무가입 등 12
2.1.4.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권리 및 의무 16
3. 보험금 청구와 제한 19
3.1. 보험금 청구와 지급 19
3.1.1. 보험금 청구 19
3.1.2. 보험금 지급 21
3.2. 보험금 지급 제한 22
3.2.1. 보험금 지급 면책 22
3.2.2. 보험사기 24
4. 보험계약의 변동 28
4.1.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28
4.1.1.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28
4.1.2.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29
4.2.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32
4.2.1.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32
5. 보험계약 분쟁해결 34
5.1. 분쟁해결 34
5.1.1.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34
5.1.2. 소송을 통한 해결 37

1. 보험의 이해

1.1. 보험계약의 구성

1.1.1. 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 이 콘텐츠에서는 보험 중 사보험(私保險)에 한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의 개념

"보험"이란?

▪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금전(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

▪ 또한,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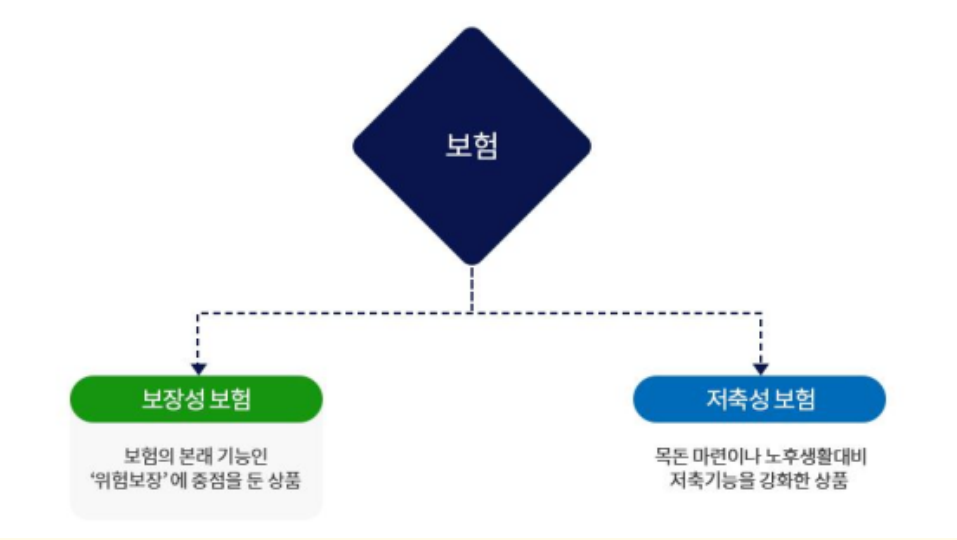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 반면,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종류

구분	보험상품 종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기타보장성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일반)연금보험, (변액/일반)유니버셜보험, 일반저축보험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상법」에 따른 보험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구분

▪ 「상법」에 따른 보험의 구분으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습니다. 「상법」에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편 보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참조).

구분	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상법」	손해보험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운송보험: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보증보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
	인보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질병보험: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보험업법」	•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 손해보험: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 제3보험: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를 알아두면 보험약관이나 안내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

구분	종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함)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이 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약관	•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계약서)으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제공하는 문서
공시이율	•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함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함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손해사정인	• 손해보험회사의 위촉을 받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라고도 함. 보험회사에 소속하여 그 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STEP1.상품소개-보험상식 꿀팁 알아두기-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보험용어 검색 참조>

2. 보험계약의 성립

2.1. 보험 가입

2.1.1. 보험가입 전 확인사항

계약 준비 단계

보험 가입 전 주요 체크사항 확인

▪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STEP1.상품소개-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보험 가입전 주요 체크사항 참조].

①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본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보험 가입 목적 확실하게 하기
: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확인해야 함

▼

③ 보험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 따져보기
: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보장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

④ 보험료, 총 납입기간 등 상품별 비교하기
: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확인하고, 회사별 상품 종류도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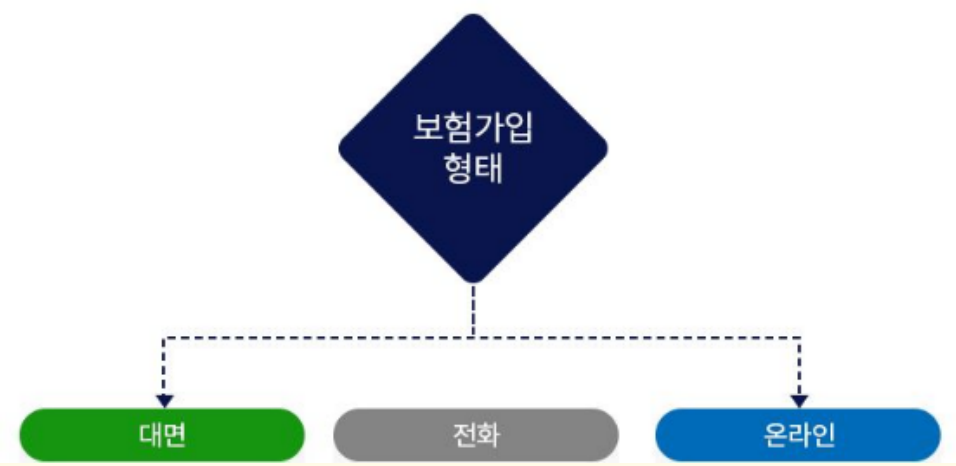
⑤ 갱신형·비갱신형 따져보기
: 갱신형은 초기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갱신되어 계속 오를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저렴할 수 있음

보험 가입의 형태

▪ 보험 가입의 형태는 소비자(보험계약 예정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크게 보험설계사 등을 만나서 가입하는 대면가입, 전화가입, 그리고 온라인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STEP1.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가입 채널에 따라 달라요 참조].

※ 보험 가입 특성

구분	개념
대면가입	보험설계사나 은행 등 보험대리점에서 판매직원을 통한 가입
전화가입:텔레마케팅 (TM. Tele-Marketing)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보험에 가입(TV홈쇼핑 방송 이후에도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온라인가입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보험회사의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일반적으로 보장내용이 단순한 상품 판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STEP1.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가입 채널에 따라 달라요 참조>

2.1.2. 보험가입 시 확인사항

보험가입 절차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1. 가입안내-보험가입 길라잡이-한눈에 보는 보험가입절차 참조].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설계사) 등으로부터 상품설명 및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② 보험회사(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발급 후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입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받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고지사항(고지사항이 없는 경우 청약서 작성)에 따라 상품설계를 수정한 후 인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④ 인수심사 후 보험회사는 인수결정이 난 보험계약 증권을 발행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는 수령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1. 가입안내-보험가입 길라잡이-한눈에 보는 보험가입절차 참조>

주요 서류 확인

주요 서류 및 서식

▪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품안내장(제안서),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 주는 상품설명서,

계약서류인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보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약관,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등을 접하게 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2. 계약서류-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주요서류 및 서식 참조].

구분	내용
상품제안서(안내장)	• 금융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게 되는 상품의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상품명, 보험료, 납입기간, 주요보장내용 등) • 상품제안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서류로, 실제 가입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함
상품설명서	• 상품의 특성과 유의사항 등 보험상품(계약)의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설명함 • 이 경우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유의사항, 환급금 및 적용이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서명)을 받음으로써,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
청약서	• 보험상품(계약)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를 수락하는 쌍방의 의사일치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짐 • 이 때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를 위하여 작성하게 되는 서류가 청약서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 가입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피보험자의 권리, 환급금, 그 밖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상품의 내용 • 보험회사는 상품판매시 보험약관을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상품)의 무효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 및 이행시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보험계약(상품)의 해지 원인 및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함
보험증권	• 보험증권은 보험상품(계약)의 판매(성립)와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일종의 증서임. • 보험증권에는 보험의 종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대한 사항 및 가입담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계약사항 확인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

▪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제2항).

> ※ 그 밖에 보험가입 시 확인해야 할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 3. 계약서류 확인-나의 계약조건 Check!-공통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 보험자가 위의 기간 내에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38조의2제3항).

2.1.3. 특정 보험의 의무가입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 등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및 가입시기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 참조).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등

의무가입 대상자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또한, "대인배상 Ⅰ"이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참조).

▪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자동차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자동차보험 대상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자동차
자동차 (다만,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③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④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의무가입의 범위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자동차보험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특례

각 법령에 따른 보험강제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강제대상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강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항공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항공사업법」 제70조)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 참조)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를 등록한 자,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한 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한 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제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참조)	•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시공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보험강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보험강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주차장법」에 따른 보험강제 (「주차장법」 제19조의16제2항)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8호)	•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4호 참조)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궤도운송법」 제26조)	•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

2.1.4.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권리 및 의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및 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보험료 감액, 보험료 반환, 보험계약 해지,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및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 감액청구권 (「상법」 제647조 및 제669조 참조)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보험료 반환청구권 (「상법」 제648조 참조)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① 선의이며 ②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계약 해지권 (「상법」 제649조 참조)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음)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상법」 제733조 참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의 권리 확정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가능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 재 지정 • 보험수익자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함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보험업법」 제141조 참조)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음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은 납입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및 금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 납입의무 (「상법」 제64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함(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됨)** •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참조)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 참조)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
손해방지의무 (「상법」 제680조 참조)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함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2 참조)	•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됨

3. 보험금 청구와 제한

3.1. 보험금 청구와 지급

3.1.1.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사고 발생 통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조).

▪ 보험계약자 등이 위의 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7조제2항).

> ※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가 불확정한 것을 말합니다[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보험용어 검색 참조].

보험금 청구 및 수령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참조]



구분	내용
보험금 청구 문의	• 보험 계약내용 확인 및 구비 서류 확인은 각 보험회사의 콜센터 및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
보험금 청구(접수)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보험금 지급 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필요시)	•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청구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보험금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 실손보험금 청구 예시



※ 자동차보험금 청구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3.1.2.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730조).

보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 사유
생명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및 제4조 참조)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 입원보험금 등: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이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 등을 지급

화재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참조)	• 화재로 발생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 ①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③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도 보상)
	• 화재 손해로 인한 지출 비용 보상 ① 잔존물 제거비용 ② 손해방지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④ 잔존물 보전비용 ⑤ 그 밖의 협력비용
자동차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제17조 및 제21조 참조)	• 자기신체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배상책임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참조)	•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참조)	•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 2개의 보장종목 ①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②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그 밖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보험금 지급 제한

3.2.1. 보험금 지급 면책

보험금 지급 면책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 또한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60조 참조).

보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참조).

구분	지급 면책 사유
생명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참조)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화재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함)
	④ 화재가 원인이 아닌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등
	⑤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함)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⑦ 핵연료물질(사용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⑧ ⑦의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른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자동차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3조 참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책임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⑥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⑥의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참조)	• 보장종목(상해, 질병)별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

※ 그 밖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보험사기

보험사기의 이해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3 참조).

-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 보험사기의 유형**
>
유형	의미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 ※ 보험사기 유형, 특성 및 보험사기 적발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예방

▪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유형을 파악한 후 적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 자동차 보험사고 유형별 대응 예시

유형	의미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 것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 →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 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 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혐의 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 촬영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보험사기 신고

▪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다음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① 금융감독원(www.fss.or.kr)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또는 ②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종목	보험사기 유형(예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 살인, 자해 등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 체결 등
자동차보험	• 자동차 고의사고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 음주·무면허 운전 등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4. 보험계약의 변동

4.1.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4.1.1.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계약의 철회

보험계약 청약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함)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참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①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③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참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계약의 해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참조).

▪ 취소권의 행사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②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③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4.1.2.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사고 발생불능의 경우

▪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44조 전단 참조).

▪ 그러나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4조 후단 참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제1호 참조).

▪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 제732조 본문).

▪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단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후단).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2항).

②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 위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 제654조제2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제1회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제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②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3항 참조).

③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④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참조).

▹ 보험회사는 위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고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2항 참조).

⑤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 증가된 경우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⑥ 보험회사의 해지로 인한 효과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증가된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 보험 해약 전 알아두세요.

① 보험 해약시 체크사항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 보험회사가 환급해야 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 해약시 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보험 해약 전 알아두세요>

4.2.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4.2.1.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 또한,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참조).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행위로 소멸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함)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4항).

>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행위"란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②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 ⑥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5항).

▸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①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 보험회사는 위의 부활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5. 보험계약 분쟁해결

5.1. 분쟁해결

5.1.1.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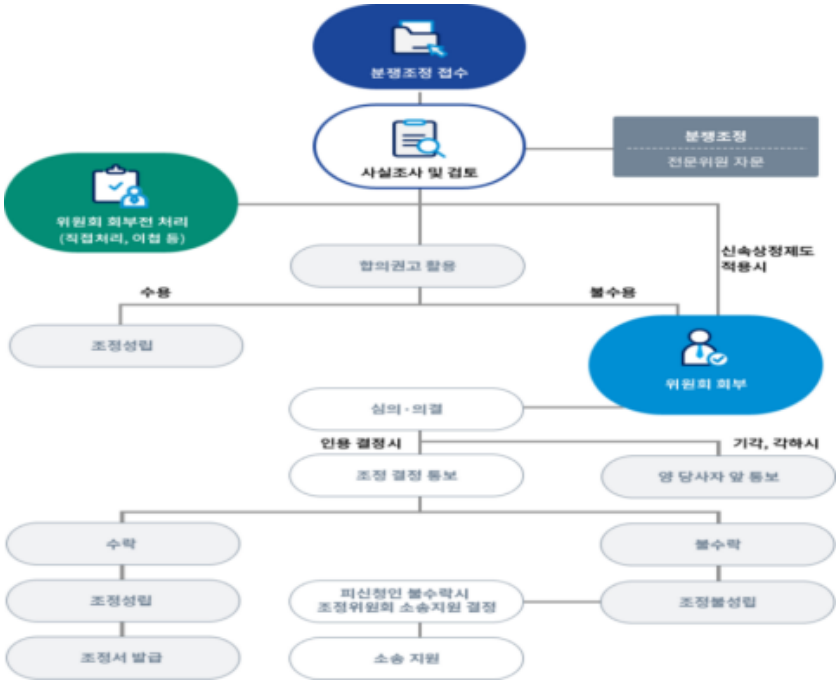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한

▪ 금융감독원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절차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길라잡이-민원상담 조회서비스-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 참조>

> ※ 그 밖에 분쟁조정의 유사사례, 분쟁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 ※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분쟁조정 절차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① 조정신청: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접수방법: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

②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③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

▼

④ 분쟁조정 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함

▼

⑤ 조정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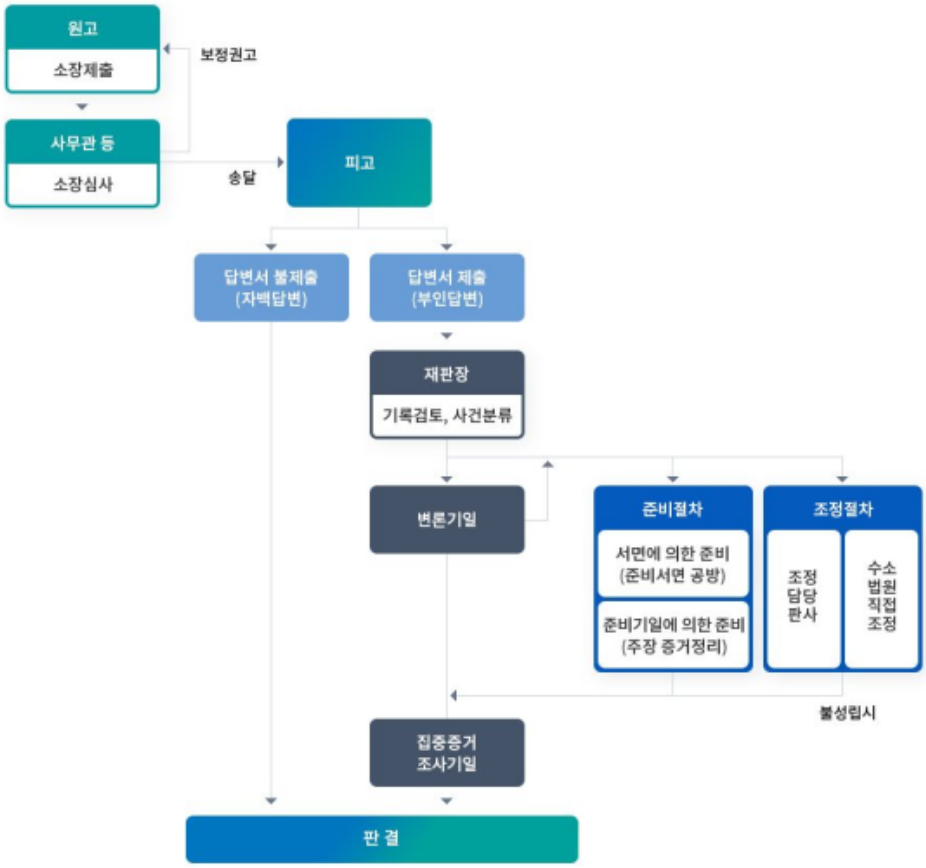
5.1.2. 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에 따른 권리구제

민사소송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www.ech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 참조>

※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다음의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